

세 목	납부방법	납부기간·납부기한
취득세	· 신고납부	· 취득일부터 60과 등기·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(상속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)
	· 보통징수	·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
주민세	· 보통징수	· 개인분 : 보통징수 (납기 8.16~8.31)
	· 신고납부	· 사업소분 : 신고납부 (신고납부기간 8.1~8.31) · 종업원분 :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자동차세	· 보통징수	· 정기분 : 제1기분(6.16~6.30) / 제2기분(12.16~12.31)
	· 신고납부	· 수시분 : 중고차 매매시 일괄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/7월 수시부과 · 연세액 일시납부(1, 3, 6, 9월) / 분할납부(3, 6, 9, 12월)
지방소득세	· 신고납부	· 법인지방소득 :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
	· 보통징수 · 특별징수	· 개인지방소득 :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(다음년도 5.1~5.31)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·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담배소비세	· 신고납부	· 다음달 20일까지
	· 보통징수	·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(지방세법 제62조) 발생 시 수시부과
레저세	· 신고납부	· 다음달 10일까지
	· 보통징수	·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
지역자원 시설세	· 신고납부	·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(기존 지역개발세분 : '지하수'는 보통징수)
	· 보통징수	·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· 매년 7월(16~31), 9월(16~30) : 기존 공동시설세분
등록면허세	· 신고납부	· 등록분 : 등기·등록하기 전까지(등기·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)
	· 보통징수	· 면허분 :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· 매년 1.16~31(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)
재산세	· 보통징수	· 정기분 - 7월(16~31) :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,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- 9월(16~30) :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,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※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· 수시분 :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
	· 신고납부	·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·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· 납입관리자가 시·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·도에 납입
지방교육세	· 신고납부	· 취득세·담배소비세·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·저세 신고납부까지
	· 보통징수	· 주민세(균등분)·재산세·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